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정보 요청 관련 일부개정법률안(5건)

검 토 보 고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제2203086호)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제2203087호)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제2203088호)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제2203089호)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제2203090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과징금 채납자 재산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7
1. 과징금 채납자에 대한 재산정보 요청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5건) 신·구조문 대비표	7
2. 현행 과징금 관련 규정	12

I. 개 요

1. 제안경위

개정 대상 법률	제안자	제안일	회부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203086호)	전진숙 의원	2024. 8.22.	2024. 8.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2203087호)			
위생용품 관리법(제2203088호)			
의료기기법(제2203089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203090호)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과징금 체납자 재산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안은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예시) 시험·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과징금)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0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사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이 제출된 5개 법률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체납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징수 주체가 지자체장인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과징금 미수납액은 2020년 27억 6,900만원에서 2023년 45억 8,8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3년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38.6%에 불과한 실정임.

< 최근 4년간 과징금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예 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과징금	2020	2,167	5,136	2,351	108.5	45.8	2,769	16
	2021	2,279	9,768	6,333	277.9	64.8	3,435	-
	2022	2,351	7,552	2,567	109.2	34.0	4,985	-
	2023	3,923	7,473	2,885	73.5	38.6	4,588	-

- 이에 5건의 개정안은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제공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독촉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과징금 징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에서는 이미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유사 입법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정지 또는 품목류 제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2.3.>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⑥ (생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과징금처분)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

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2. 3.>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제6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⑤ (생략)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사

「화장품법」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과징금 체납을 방지하여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정보 요청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	---

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3086호)

현행	개정안
제20조(과징금)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20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u> <u>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u> <u>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u> <u>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사</u>

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3087호)

현행	개정안
제28조(과징금) ① ~ ⑦ (생략) <u><신 설></u>	제28조(과징금)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u> <u>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u> <u>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사</u> <u>⑨ (현행 제8항과 같음)</u>
<u>⑧ (생략)</u>	

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3088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u>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u>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u>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u>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u>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사</u>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u>⑤ (생략)</u>	

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제3089호)

현행	개정안
제38조(과징금처분)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8조(과징금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사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u>⑤ (생략)</u>	

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제3090호)

현행	개정안
제20조(과징금처분)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0조(과징금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u> <u>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u> <u>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사</u>
<u>⑤ (생략)</u>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참고 2] 현행 과징금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의 운영자가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 ⑧ (생략)

「위생용품 관리법」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 금액은 국가 또는 부과·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의료기기법」

제3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생략)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0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생략)